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7일 21시 47분



# 목차

목차	2
토양오염검사	3
검사종류	3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3조)	3
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(규칙 제14조 관련)	3

<b>토양오염검사</b>	<b>토양오염실태조사</b>	<b>토양오염기준</b>
<b>토양오염도 검사대상업체 현황</b>		

## 검사종류

종류	내용
토양오염도 검사	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
누출검사	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

#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3조)

구분	정기검사	수시검사
토양오염도검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·10년·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</li> <li>② 15년 이후 부터는 매 2년에 1회</li> <li>③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(Dike) 내 설치된 저장시설(이하 “블록”이라 한다)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.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다음 지역에 해당될 경우 매년검사 대상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gt;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</li> <li>&gt; 나. 「지하수법」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</li> <li>&gt; 다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</li> <li>&gt; 라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(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)</li> </ul> </div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</li> <li>② 양도·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</li> <li>③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</li> <li>④ 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(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)</li> <li>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(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을 것)</li> </ol>
누출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.</li> </ul>	

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	검사항목
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	유류(동·식물성 제외) ▪ 벤젠·톨루엔·에틸벤젠·크실렌(BTEX) ▪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	카드뮴·구리·비소·수은·납·6가크롬·아연·니켈·몰소·유기인화합물·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·시안·페놀·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중 해당항목
송유관 시설	유류(동·식물성 제외) ▪ 벤젠·톨루엔·에틸벤젠·크실렌(BTEX) ▪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	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

# Yeosu Web Contents

